

|   |                       |      |             |
|---|-----------------------|------|-------------|
|  | <b>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규정</b> | 규정번호 | 3-8-20      |
|   |                       | 제정일자 | 2006.10.18. |
|   |                       | 개정일자 | 2018.03.01. |
|   |                       | 개정차수 | 1차          |
|   |                       | 소관부서 | 교무입학처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탁생의 선발 기준에 관한 사항
2. 위탁교육 경비의 부담 및 납부 방법
3. 위탁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위탁의뢰 산업체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5. 산업체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산업체의 시설 및 교육자력이 있는 자의 활용에 관한 사항
7. 학교와 산업체와의 상호 지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탁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2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탁산업체 임직원 및 대학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교체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둔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6 년 10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